호주 연방대법원

국 가 개 요

1. 국명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2. 수도 : 캔버라(Canberra, 36만명)
3. 인구・면적 : 25,415,271명(2019년), 7,692,024㎢(한반도의 35배)
4. 공용어 : 영어
5. 1인당 GDP : 53,380불(2019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양원제

1. 명칭 : 호주 연방대법원

○ High Court of Australia

2. 연혁

○ 1901. 연방헌법 발효

○ 1903. 연방대법원 설립

○ 1979. 연방대법원법 제정

3. 구성

○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의 연방대법관으로 구성됨

○ 연방대법관은 연방총독이 임명함(연방헌법 제72조 제1항)

○ 연방대법관은 입증된 부정행위 또는 무능력을 근거로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동일 회기에 의회의 양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연방총독이 해임하는 경우 외에는 해임되지 아니함(연방헌법 제72조 제2항)

○ 연방대법관의 정년은 70세까지임(연방헌법 제72조 제3항)

○ 연방대법관의 자격은

1) 연방의회가 설립한 법원의 판사 혹은 (노던 테리토리 지역 법원의 판사를 제외한) (준)주 법원의 판사였거나

2) 5년 이상 연방대법원 혹은 (준)주 대법원에서 사무변호사 또는 법정변호사(사무변호사 및 법정변호사 등록기간을 합쳐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혹은 법률실무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1979년 연방대법원법 제7조)

4. 권한

○ 연방법원 및 주법원의 상고심 관할(연방헌법 제73조)

○ 원심 관할

1) 조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연방헌법 제75조 제1항)

2) 타국의 영사 또는 기타 대표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연방헌법 제75조 제2항)

3) 연방 또는 연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자가 당사자인 사안(연방헌법 제75조 제3항)

4) 주 사이, 서로 다른 주의 국민 사이, 또는 주와 다른 주의 국민 사이에 발생한 사안(연방헌법 제75조 제4항)

5) 연방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영장(mandamus), 직무금지영장(prohibition) 또는 가처분명령(injunction)을 요구하는 사안

○ 연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원심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

1) 헌법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해석과 관련된 사안(연방헌법 제76조 제1항)

2)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제기된 사안(연방헌법 제76조 제2항)

3) 해사 관할권에 관한 사안(연방헌법 제76조 제3항)

4) 서로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주장되는 동일한 쟁점에 관한 사안(연방헌법 제76조 제4항)

○ 호주 커먼로의 내용형성과 발전에 대하여 최종적 권한을 가짐

○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1) 연방대법원의 원심 관할권을 통해 제기되거나(연방헌법 제76(1)조; 1903년 법원조직법 제30조)

2) 다른 법원에 사건의 계속 중에 법률의 위헌성이 제기될 때 연방대법원에 이송되거나(1903년 법원조직법 제40조)

3) 청구인적격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연방대법원에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짐

○ 선거소송법원으로서 기능함(1918년 연방선거법 제354조 제1항)

○ 연방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확인함으로써 연방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5. 연락처

○ 주　　소 : Parkes Pl
Parkes ACT 2600 Australia

○ 전　　화 : +61 2 6270 6811

○홈페이지 : http://www.hcourt.gov.au (영문홈페이지)

※ 출처 : 호주 연방헌법, 1979년 연방대법원법, 1918년 연방선거법, 1903년 법원조직법

김선희, 호주 헌법과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 헌법재

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발간 예정)